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
제245회 제2차 정례회 (2020. 12. 8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
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정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최국모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-189
- 나. 제안자: 최은하 의원 외 11명
- 다. 제안일자: 2020년 11월 24일(목)
- 라. 회부일자: 2020년 11월 24일(목)

2. 제안사유

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대규모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최일선 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보건·의료, 요양 및 돌봄, 보육, 운송, 물류 배송 등 대면업무 종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·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- 다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라. 이 조례의 적용대상(안 제4조)
- 마.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, 제6조)
- 바. 지원 사업(안 제7조)
- 사.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(안 제8조 ~ 안 제14조)
- 아. 타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(안 제1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: 「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(국회 입법예고)
- 나. 입법예고: 2020. 11. 19. ~ 2020. 11. 24.
- 다. 제정 조례안: 붙임
- 라. 비용 추계서: 붙임(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5. 검토보고

- 동 조례안은 2020년 11월 24일 최은하 의원 외 11명의 발의로 제안 되었으며 감염병의 확산,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임에도 재난의 한가운데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해당 업무를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먼저 조례안을 살펴보면,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,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,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과 필수노동자 처우 등에 대한 실태 조사,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함(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)
-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이와 같이 조례안을 살펴볼 때, 본 제정 조례안은 열악한 재난 현장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 특히, 사회전반에 이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으며

정부에서도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강화를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논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「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안)이 제출되어 입법예고를 거쳐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음.

- 최근 코로나 19가 사회적 이슈화되는 시기에 필수노동자라는 용어가 법적 개념이 모호하므로 그 개념과 범위의 정립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, 동 조례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임. 아울러 동 조례의 시행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처해 있고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여 우리 사회가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사료됨.

【참고자료】

「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안)」 <2021.11.5. 제출>

법률 제 호

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감염병의 전염, 산업재해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 가운데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·지원함으로써 재난극복 및 포용적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.
2. “대면업무”란 의료, 돌봄, 복지, 안전, 물류, 운송 등 국민과 직접 대면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필수업종”이란 재난상황 시에도 국민의 생명·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통한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.
4. “필수노동자”란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고,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
2. 필수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관한 사항
3. 필수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4. 필수노동자의 처우수준 개선 및 고용안정성 강화에 관한 사항
5. 필수노동자 업종별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고용노동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,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노동자의 업종별 현황,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세부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(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) 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3.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2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8조(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)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위생·안전시설 조성 및 방역물품 지원사업
2.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 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사업
3.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사업
4.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

제9조(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지원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상담지원의 내용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필수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, 사용자는 이를 보호·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관계 기관 등의 협조)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·시행, 조사·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

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)의 장,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2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